

◆ 변경회생계획안(확정안) 요지 ◆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 원금, 개시전이자 및 변경인가전 개시후이자
 - 확정채권액 전액을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
- 변경인가후 개시후이자
 - 변경인가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 변제기일 : 본 변경회생계획안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변경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는 본 변경회생계획안 인가 후 인수자에게 발행하는 신주의 유상증자 효력발생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

※ 확정채권액 : “확정채권액” 이라 함은 원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상환일정에 따라 변제할 기준 채권액을 원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조기변제 할인율(연 4.91%)로 본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의 전일을 기준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회생담보권 확정구상채무

- 원금, 개시전이자 및 변경인가전 개시후이자
 - 확정채권액 전액을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
- 변경인가후 개시후이자
 - 변경인가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다. 회생담보권 미확정구상채무

- 원금, 개시전이자 및 변경인가전 개시후이자
 -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원 회생계획상 시인된 채권액 범위내에서 대위변제된 원금, 개시전이자 및 변경인가전 개시후이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전액을 현금 변제
- 변경인가후 개시후이자
 - 변경인가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라. 회생담보권 물상보증채무

-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원 회생계획상 시인된 채권액은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 후 또는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원 회생계획의 인가일로부터 1년(단, 주채무의 변제기일이 원 회생계획의 인가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변제하고, 변제되지 않은 원금, 개시전이자 및 변경인가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처분대금이 원 회생계획에서 시인된 채권액 중 변제되지 않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초과금액을 담보물의 처분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변경인가전·후 개시후이자

- 변경인가전·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마. 회생담보권 보증채무

○ 원금, 개시전이자 및 변경인가전 개시후이자

- 원 회생계획상 시인된 채권액은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 후 또는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원 회생계획의 인가일로부터 1년(단, 주채무의 변제기일이 원 회생계획의 인가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단, 채무자가 위탁자인 신탁재산은 신탁재산이 처분되어 처분대가의 회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

○ 변경인가후 개시후이자

- 변경인가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바. 회생담보권 토지매매대금채무

○ 원금, 개시전이자 및 변경인가전 개시후이자

- 확정채권액 전액을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

○ 개시전 이자 및 개시후 이자

- 개시전 이자 및 개시후 이자는 면제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 대여채무

○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확정채권액의 30.785363967%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
-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

권의 변제에 갈음

- 변경인가전·후 개시후이자
 - 변경인가전·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나. 회생채권 확정구상채무

-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확정채권액의 30.785363967%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
 -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
- 변경인가전·후 개시후이자
 - 변경인가전·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다.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

-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원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은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적법하게 대위변제하여 채무자의 변제책임(구상채무)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구상채권의 73%(원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의 대상)는 변제책임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출자전환한 후 6:1의 비율로 병합
 - 원 회생계획상 현금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은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적법하게 대위변제하여 채무자의 변제책임(구상채무)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구상채권의 27%(원 회생계획상 현금변제의 대상)는 변제책임이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원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조기변제 할인율(연 4.91%)로 할인한 후 그 금액의 30.785363967%를 변제책임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하며, 위 구상채권 중 변제 및 출자전환되지 않는 나머지 채권은 면제
 -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
 - 단, 채무자의 변제시기 및 본 변경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금액이 미확정하므로 예상 변제재원을 ESCROW계좌에 유보하여 관리
- 변경인가전·후 개시후이자
 - 변경인가전·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라. 회생채권 보증채무

-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원 회생계획에 의하여 시인된 보증채권액은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에 대한 담보권 실행 후 또는 주채

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원 회생계획의 인가 일로부터 1년(단, 주채무의 변제기일이 원 회생계획 인가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로부터 1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단, 채무자가 위탁자인 신탁재산은 신탁재산이 처분되어 처분대가의 회수가 완료된 경우)에는(이하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함

- 원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은 보증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3%(원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의 대상)는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출자전환한 후 6:1의 비율로 병합
- 원 회생계획상 현금변제의 대상이 되는 채권 부분은 보증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27%(원 회생계획상 현금변제의 대상)는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원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조기변제 할인율(연 4.91%)로 할인한 후 그 금액의 30.785363967%를 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하며, 위 보증채권 중 변제 및 출자전환되지 않는 나머지 채권은 면제
-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같음
- 단, 채무자의 변제시기 및 본 변경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금액이 미확정으므로 예상 변제재원을 ESCROW계좌에 유보하여 관리

○ 변경인가전·후 개시후이자

- 변경인가전·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마. 회생채권 일반상거래채무

○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확정채권액의 30.785363967%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
-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같음

○ 변경인가전·후 개시후이자

- 변경인가전·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바. 회생채권 소액상거래채무

○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확정채권액의 30.785363967%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
-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같음

○ 변경인가전·후 개시후이자

- 변경인가전·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사. 회생채권 임대보증금채무

○ 원금

- 원 회생계획에서 시인된 임대보증금 원금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대보증금으로 종전 임대보증금을 반환
- 만약, 해당 임대목적물이 재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이 종전의 임대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반환 임대보증금은 임대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데 새로운 임대보증금이 종전 임대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대보증금과 새로운 임대보증금의 차액은 종전 임대차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제
- 해당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채무를 인수하도록 하거나, 매수인이 임대보증금채무를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대보증금을 전액 변제
-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대보증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변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변제

○ 개시전이자 및 변경인가전·후 개시후이자

- 개시전이자 및 변경인가전·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아. 회생채권 임원보수

○ 원금 및 개시전 이자

- 확정채권액의 30.785363967%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출자전환
-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같음

○ 변경인가전·후 개시후이자

- 변경인가전·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자. 조세등채무

- 원 회생계획 인가 후 변제 등으로 소멸되어 변동된 잔액 전액(가산금 및 증가산금 포함)을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

차. 소송 또는 조사확정재판 중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 등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본 변경회생계획안에서 분

류한 채권조별 분류에서 정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 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단, 각 사건에 하나 이상의 종류의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별로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 방법에 따라 변제

카. 미확정채무의 변제를 위한 ESCROW 계정 예치

- 미확정채무(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 회생채권 보증채무, 소송 또는 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본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자의 변제책임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자는 본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위하여 변제재원을 별도로 유보하여 관리

3.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가. 주식의 소각

- 본 변경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 전에 발행된 주식 중 원 회생계획 인가 당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추후 공익채권으로 밝혀진 회생채권에 대해 원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효력이 없는 주식은 무상소각
- 주식소각의 효력은 본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에 발생

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 회생채권 대여채무, 회생채권 확정구상채무,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 회생채권 보증채무, 회생채권 일반상거래채무, 회생채권 소액상거래채무, 회생채권 임원보수채무에 대한 출자전환은 주당 5,000원의 액면가 주식을 주당 5,000원의 발행가로 발행
- 출자전환 신주의 효력은 본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익영업일 발생
-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

다.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 주식 무상소각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2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재병합
-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 회생채권 보증채무, 소송 또는 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인 회생채권 기타 미확정채무가 확정되는 경우 원 회생계획 및 본 변경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경우 그 주식도 동일한 비율로 재병합
-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
- 주식 재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본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2영업일에 발생.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 회생채권 보증채무, 소송 또는 조사확정재판이 진행 중인 회생채권 기타 미확정채무가 확정되어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주식 재병합의 효력은 해당 주식의 효력발생일의 익영업일에 발생

라.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 채무자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재원 조달을 위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액면가는 5,000원, 발행가 5,000원으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34,000,000주를 발행하고 두바이투자청이 이를 인수함.
-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은 본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2영업일이며,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의 효력은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익일에 발생
-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자는 인수하는 주식 34,000,000주의 5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신주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양도, 증여, 담보제공, 매각, 기타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처분이 금지된 신주를 주권발행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고, 그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